#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47 발의연월일: 2021. 7. 22.

발 의 자:김용판·하영제·정희용

김예지 · 박덕흠 · 박대수

서일준 • 이종성 • 추경호

권명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 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 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규정이 2021년 12월 31일 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20년 코로나 팬데믹 확산 이후 전세계 항공산업 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 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 택을 통해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 및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 의 지원을 지속 중임.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 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안 제6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를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로,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100분의 10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과세특례)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 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 -----2024년 12월 31일까 <u>지</u>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 -----1천분의 20 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 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고----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경 감한다. <단서 삭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